

붙임 3

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단계 명칭	■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	■ 지역 유행/인원 제한	■ 권역 유행/모임 금지	■ 대유행/외출 금지
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(주간 평균) ▶ 전국: 500명 미만 ▶ 수도권: 250명 미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▶ 전국: 500명 이상 ▶ 수도권: 250명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▶ 전국: 1,000명 이상 ▶ 수도권: 500명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 ▶ 전국: 2,000명 이상 ▶ 수도권: 1,000명 이상
모임	■ 방역수칙 준수	■ 8명까지 모임 가능 (9인 이상 사전모임 금지)	■ 4명까지 모임 가능 (5인 이상 사전모임 금지)	■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(3인 이상 사전모임 금지) *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
행사	■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	■ 100인 이상 행사 금지	■ 50인 이상 행사 금지	■ 행사 금지
집회	■ 5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1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5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
3그룹 시설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야외 공연장	■ 좌석 띄우기없음	■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		
		■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,000명 이내로 제한		
	■ 운영시간 제한x	■ 운영시간 제한x	■ 운영시간 제한x	■ 22시이후 운영제한
	■ 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